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에 남성 배우자 포함 〉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4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에 남성 배우자 포함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8일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반 진료 시 자신의 연차 또는 반차를 활용하려 해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음.

이에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태아검진 시간 허용 대상에 남성 배우자 포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대상을 현행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u>여성근로자가</u>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생략)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 <u>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u> ----- ----- -----.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4조의2¹⁾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²⁾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1)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

청구하는 경우 임금 삭감없이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태아 검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성의 경우 태아 정기건강검진 허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장 내 분위기,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태아 정기검진 시 동반 진료가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어 보임.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대상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혼의 존재 여부는 사법부가 당사자

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³⁾하는 문제인바, 사업주가 사실혼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 및 입증자료 제출 등의 사실혼 관계 증빙요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중인 배우자와 태아를 충분히 돌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을 출산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⁵⁾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3)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4)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서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18.8.22., 여성고용정책과-3563)하고 있음.

5)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극복 대책(‘24.6.19)에 포함